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86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이재관 · 박지원 · 이정문
송재봉 · 안도걸 · 박용갑
김영환 · 정준호 · 권칠승
윤준병 · 문진석 · 정진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소관</u> <u>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u> <u>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u> <u>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u>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③ 제1항 및 제2항</u> ----- ----- -----.